

## CELLMARK BASIC MATERIALS DIVISION, CELLMARK AB 및 모든 CELLMARK 자회사들에 적용되는 일반판매약관

본 일반판매약관(“본 약관”)에서 판매자인 CellMark AB 또는 여하한 CellMark 자회사는 “판매자”, “판매자(의)” 등으로 지칭하고,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당사자는 “구매자”로 지칭한다.

“당사자들”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의미한다.

“CellMark Group”은 CellMark AB와 CellMark AB가 의결권/소유지분의 최소 오십(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 1. 일반 사항

- 1.1. 제품 및/또는 서비스(“본건 상품”) 판매계약은 구매주문에 대한 판매자의 서면 확인 시 체결되며(“본건 계약”), 본건 계약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본 약관에 의해 규율된다. “구매주문(서)”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발주한 본건 상품에 대한 구매주문을 의미한다.
- 1.2. 본 약관을 포함하여 본건 계약과 상충하거나 본건 계약에서 벗어나는 조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한 무효하다.
- 1.3. 본 약관과 본건 계약의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본건 계약이 우선한다.

### 2. 견적서, 구매주문서 및 합의

- 2.1. 판매자가 작성한 여하한 형식의 견적서는 약속이 아니며 판매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발행한 모든 견적서는 취소 가능하고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구매주문은 판매자가 서면으로 승낙(“판매주문확인”)한 후에야 구속력을 가지며, 판매주문확인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본건 계약이 성립된다.
- 2.2. 판매자의 직원, 대표 및/또는 대리인에 의한 구두 진술 및 합의는 판매자의 적법한 수권대리인(들)이 서면으로 해당 구두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한 판매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 2.3. 구매자는 청약 및/또는 판매자의 (가격)견적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한 모든 데이터, 도면, 계산, 설계 및 기타 모든 문서의 정확성과 기능적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4. 구매자에게 공급된 견본품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품질, 종류, 상품성, 적합성 또는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바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하한 종류의 명시적·묵시적 보장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본건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납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 2.5. 본건 계약 및/또는 본 약관에 대한 어떠한 변경, 추가, 보완 및/또는 기타 변동도 판매자가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은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가격

- 3.1.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의 가격에는 여하한 관할권에서 본건 상품 또는 그 인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유사한 적용세금, 관세, 부과금 또는 요금(채선료 또는 체화료나 기타 연체 또는 지연 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관세 및 유사한 부과금 또는 요금(채선료 또는 체화료나 기타 연체 또는 지연 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하며, 판매자는 각 청구서에 해당 세금, 관세, 부과금 또는 요금을 추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구매자는 다툼 또는 이의제기없이 본건 상품과 관련된 모든 채선료·체화료에 대하여 판매자를 면책하고 해당 청구서가 제시된 날로부터 삼십(30)일 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 3.2. 원·부자재, 에너지, 제3자로부터 판매자가 취득하는 제품, 정부 요금,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비용결정요인이 인상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에 따라 주문된 본건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기 인상을 통지하고 구매자는 해당 원금 또는 차기 할부금의 지급과 동시에 상기 가격 인상분을 지급한다.

### 4. 지급

- 4.1.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본건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청구서 기재일로부터 삼(3) 영업일 내에 여하한 상계 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순대금을 해당 청구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령한다. 판매자에 대한 자금이체와 관련된 모든 은행 수수료는 구매자의 계산으로 한다.
- 4.2.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지급될 여하한 대금을 유보 또는 감액하거나 기존 및/또는 장래의 청구를 본건 계약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CellMark Group 회사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라 판매된 본건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과 상계할 권리가 없다.
- 4.3. 지급은 판매자가 판매자 계정에 입금된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즉시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 4.4. 본건 상품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엄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구매자가 지급일이 도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없이, 판매자는 지급일부터 일수계산하여 모든 미지급액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연체된 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CellMark의 판매청약 또는 판매계약에서 달리 합의된 경우 등), 이자율은 연 8%, 또는 연 8%에 지급일의 (해당 통화에 대한) LIBOR를 더한 이율(둘 중 더 높은 이율)로 한다.
- 4.5.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지급일이 도래한 여하한 청구액,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구매자에 의한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없이 여하한 본건 상품에 대한 의무이행 및/또는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판매자는 미지급액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판매자의 신용공여, 인도 또는 기타 이행을 중단,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6. 연체대금의 추심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재판상·재판외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과 경비(합리적인 변호사비용, 전문가 보수, 법원 및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구매자의 계산으로 한다. 판매자는 대금을 최장기 미결제 청구서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관련 이자 및 비용(위에 명시된 재판상·재판외 비용과 경비(있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더한 금액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대금의 충당은 구매자가 제시한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관계없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4.7. 구매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 거래은행의 재무상태, 사업, 전망상의 변동이나 본건 계약상 구매자의 의무 이행 및/또는 완수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라도 등기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서면 통지로 이를 판매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구매자는 해당 통지에서 해당 사유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해당 사유가 본건 계약상 구매자의 의무 이행에 미칠 수 있는 현재 또는 장래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 4.8. CellMark는 구매자가 자금난 (또는 기타 사유)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 거래가 CellMark의 신용보험한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구매자가 (CellMark가 수락할 수 있는) 신규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한 구매주문의 이행을 중지 및/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5. 인도

- 5.1. 본건 상품은 본건 계약에 명시된 인도 조건에 따라 인도되고, 인도 조건은 본건 계약 체결일 현재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상업회의소가 발행한 최신 버전의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해석된다.
- 5.2. 인도 일시는 대략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한다. 상기 일시는 정보 목적상 제공되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요인이 아니다. 구매자가 해당 인도일 전에 필요한 모든 구매주문 및 충분한 인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매자는 판매자가 통보 또는 확인한 인도일을 충족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판매자는 본건 상품을 부분 인도하고 인도된 본건 상품의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5.3. 본건 상품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본건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의된 인코텀즈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구매자가 지급을 유예하여 인도가 중단된 본건 상품 및 구매자가 부당하게 인도를 거부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본건 상품은 구매자의 위험부담 및 비용 하에 판매자가 보유 및 보관한다.
- 5.4. 본건 상품의 인도 지연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본건 계약을 해지하고/하거나 여하한 종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구매자가 해당 인도를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도 지연으로 초래된 여하한 종류의 간접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지연을 통지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해당 통지 수령일로부터 삼십(30)일의 시정

기간을 허용한다. 위 내용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제15조가 적용된다.

- 5.5. 판매자에 의한 본건 상품의 모든 인도는 항상 판매자의 신용승인을 전제로 한다. 판매자가 언제라도 구매자의 재무상태로 인하여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른 본건 상품의 생산 또는 인도가 타당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판매자는 인도조건으로 전액 또는 일부 선지급을 요구하고, 담보제공 또는 다른 지급조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동안 본건 계약의 (일부) 이행을 중단하거나 제16조에 명시된 서면 통지에 의해 본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기 해지와 관련된 판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본건 계약 또는 법률상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구매자는 여하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 5.6. 본건 계약에 따른 CellMark의 이행은, (CellMark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시장가격의 (화주 및 최종 수령인 모두 수락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선박 적재공간 및 적합한 선박을 조건으로 하며, CellMark가 이용가능한 선박 적재공간 및/또는 적합한 선박 및/또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기다리고 있는 한, CellMark는 그 발생 장소와 경위를 불문한 어떠한 손실 또는 책임도 부담할 수 없다.

## 6. 본건 상품의 수거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한, 구매자는 본건 상품을 수거하도록 준비되었다는 판매자의 통지 수령일로부터 오(5)일 내에 본건 상품을 수거한다. 구매자가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제16조에 명시된 본건 계약의 해지권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해당 상품을 구매자의 위험 하에 보관하고 구매자의 비용으로 유지하며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 7. 품질 및 수량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확정된 주문된 본건 상품의 중량 및 분석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그 이전 또는 이후 일자에 결정된 중량이나 분석은 증거 가치가 없으며 구매자는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8. 검수 및 이의제기

- 8.1. 인도 시, 구매자는 통상적인 또는 상황상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본건 상품을 검수한다.
- 8.2. 본건 상품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결함 및/또는 미준수의 성격과 정도를 정확하게 기술한 서면으로 작성되어, 인도 시 신중한 검수 및/또는 합리적인 시험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가시적인) 결함 또는 미준수와 관련하여 해당 인코텀즈에 따라 인도일로부터 이(2)일 내에 반드시 [claims.BC@cellmark.com](mailto:claims.BC@cellmark.com)(본 조의 청구시한 목적상 동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구매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건 상품은 구매자에 의해 승낙되고 본건 계약의 요건을 준수하며 본건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제기하는 구매자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소멸 및 포기되고 청구시한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 8.3. 기타 결함 또는 미준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매자가 발견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상품의 관련 인코덱스에 따른 인도일로부터 십오(15)일 내에 [claims.BC@cellmakr.com](mailto:claims.BC@cellmakr.com)(본 조의 청구시한 목적상 동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본건 상품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 기한(관련 인코덱스상 인도 후 최대 15일)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건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한 구매자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소멸 및 포기되고 청구시한이 완성된다.
- 8.4. 결함 및/또는 미준수의 성격 및 정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된 판매자에 대한 청구의 충분한 내역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위에서 언급한 통지 후 십오(15)일 내에 [claims.BC@cellmark.com](mailto:claims.BC@cellmark.com)(본 조의 청구시한 목적상 동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인도된 본건 상품의 품질 또는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구매자는 선서한 검정인의 보고서를 판매자에게 추가로 제출한다. 이의제기서 제출은 제4조에 규정된 구매자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충분한 내역과 선서한 검정인의 보고서를 추가 15일(관련 인코덱스상 인도 후 최대 30일)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건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한 구매자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소멸 및 포기되고 청구시한이 완성된다.
- 8.5. 구매자가 본건 상품을 사용, 처리 및/또는 (재)판매하는 것은 구매자가 본건 상품을 무조건적으로 승낙하고 본건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8.6. 구매자는 본건 상품에 일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상품의 전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 8.7.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의 최초 요청 시 판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도록 선임된 제3자가 해당 본건 상품을 검수, 분석 및/또는 샘플링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상기 검수, 분석 및/또는 샘플링은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외부 검정회사 또는 실험기관이 수행한다.
- 8.8. 이의가 제기된 본건 상품은 적절한 방식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제8.7조에 명시된 검수, 분석 및/또는 샘플링이 가능하도록 분리하여 유지한다. 구매자가 상기 의무를 적시에 또는 요청된 방식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해당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본건 상품은 결함없이 승낙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건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한 구매자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소멸 및 포기되고 청구시한이 완성된다.
- 8.9. 판매자는 본건 상품이 손상되지 않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와 함께 반품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반품된 여하한 본건 상품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당사가 반품에 동의하거나 서면으로 반품을 지시한 본건 상품은 구매자의 위험 부담 하에 판매자가 지시한 목적지로 반품된다. 구매자가 반품하고 판매자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한 본건 상품은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요금 없이

(판매자의 재고상 본건 상품의 가용성을 전제로) 교체 또는 보수된다. 판매자에게 반품된 본건 상품에서 결함 또는 미준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운송, 시험, 취급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기타 비용 및/또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한다.

- 8.10.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주장되는 결함 또는 미준수가 오용, 부주의, 부적절한 설치, 사고, 부적절한 보수, 적절한 유지보수의 결여, 개조, 변경, 하자 있는 또는 부주의한 보관, 운송 또는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어떠한 종류의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 9.

### 10. 책임 제한

- 10.1.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판매자는 인도된 본건 상품의 유용성, 충분성, 상품성 또는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관하여 어떠한 명시적·묵시적인 보장 및 진술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 10.2. 어떠한 상황에서도, 판매자는 본건 계약, 판매자의 본건 상품 판매 또는 본건 상품 사용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및 보장 위반, 기타 계약 위반, 불법행위(과실 포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하한 종류의 특별, 부수적, 간접,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 또는 손실, 환경훼손, 비용 또는 경비(매출 손실, 일실이익, 평판 손실, 영업권 손실, 작업 중단, 생산 실패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해 구매자 또는 제3자들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체의 청구에 대한 판매자의 총 책임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 대상인 본건 상품의 청구가액 또는 미화 500,000달러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10.3. 구매자는 본건 상품 및/또는 본건 상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제3자들이 입은 손해, 손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비용, 경비 및 채무에 관한 제3자들의 청구에 대해 판매자를 면책하고 그로 인해 판매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 10.4. 판매자는 제3자들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판매자는 제3자들 측의 불이행 또는 미준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0.5. 구매자는 위의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십(20)일 내 또는 관련 인코텀즈에 따른 본건 화물 인도일로부터 삼십(30)일 내(그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claims.BC@cellmark.com](mailto:claims.BC@cellmark.com)(본 조의 청구시한 목적상 동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로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손해와 관련하여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소멸 및 포기되며 청구시한이 완성된다.
- 10.6. 청구(손해배상청구 포함)와 관련된 소송은 관련 인코텀즈에 따른 청구 대상인 본건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일(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앞 문장에 따라 제기되지 아니한 청구는 무효이며, 최종적으로 소멸 및 포기되고 청구시한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 10.7. 구매자는 본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구매자의 책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효하게 유지한다. 판매자의 최초 요구 시, 구매자는 구매자의 보험가입을 증빙하는 보험증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변동사항을 판매자에 계속 통보한다.

## 11. 상계

판매자는 청구 성격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CellMark Group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판매자 및/또는 CellMark Group 회사가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제 및/또는 상계할 권리를 가진다. 구매자의 공제 또는 상계 권리는 명시적으로 부인된다.

## 12. 비밀유지

- 12.1. 구매자는 본건 계약의 존재 및 내용과, 본건 계약(그 작성)과 관련하여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구매자에 제공한 기밀성을 띤 모든 기술, 상업 및 재무 자료와 기타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한다. 구매자는 본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판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즉시 그러한 모든 정보를 판매자에 반환하며, 구매자는 그에 대한 사본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12.2. 구매자는 판매자가 사전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 및 구매자가 위 제3자들이 동일한 비밀유지계약에 의해 구속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위 비밀정보를 제3자들에 공개할 수 있다.

## 13. 정보 이용

구매자는 본건 상품 및 구매자의 본건 상품 사용과 판매자측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구매자가 의도한 목적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전문지식, 노하우 및 판단을 활용하고 전적으로 이에 의존해야 한다. 본건 상품의 적합성 및 사용에 관하여 제공된 세부사항 및 정보는 구속력이 없으며, 판매자는 그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14. 법률 및 기준 준수

구매자는 본건 상품의 취급, 사용, 처리, 운송, 보관, 처분 및 판매가 법률, 규정, 법규 또는 기준에 따른 요건 또는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안전을 위해, 본건 상품의 취급, 처리 및 보관과 처분에 관하여 생산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적절한 위생, 안전 및 환경기준과 그 집행에 관한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구매자가 의도한 본건 상품의 취급, 사용, 처리, 운송, 보관, 처분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법규 및 기준(모든 보건, 안전 및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 지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구매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15. 불가항력 및 공급망 문제

- 15.1. 불가항력은 본건 계약 당시 예측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발생(천재지변, 입법조치, 정부의 조치, 명령 또는 규정이나 기타 행정조치, 법원의 명령 또는 법령, 지진, 홍수, 화재, 폭발, 전쟁, 폭동, 태업, 사고, 전염병(COVID-19, 기타 코로나바이러스 및/또는 기타 감염병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엔데믹(COVID-19, 기타 코로나바이러스 및/또는 기타 감염병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질병(COVID-19, 기타 코로나바이러스 및/또는 기타 감염병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파업, 직장폐쇄, 감산, 노동쟁의, 산업분쟁, 하수급자 또는 공급자 측의 지연, 제조업체, 하수급자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인 문제, 생산 제한 또는 중단이나 전력소비 감축을 위한 정부 명령, 필요한 노동력 또는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운송 부족 또는 불가, 공장 또는 필수 기계의 고장, 긴급 수리 또는 유지보수, 국가가 부과한 관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 15.2. 본건 계약상 판매자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금지 또는 방해를 받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판매자의 의무 이행은 중단되며, 판매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매자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5.3. 불가항력 사유가 합의된 인도일로부터 30(삼십)일 연속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연장(또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 측의 책임 없이 서면 통지로 본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15.4. 현재의 에너지 부족, 생산 감축, 예측 불가능한 생산 연속성 및/또는 운송 문제로 인해, 본건 계약은 실제로 구매 및 운송이 가능한 본건 상품을 엄격히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판매자의 하수급자(들) 및/또는 판매자의 공급자(들)가 불이행할 경우 판매자가 본건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부여받게 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그 종류 또는 경위를 불문하고 발생한 모든 손실 및/또는 채무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이 없으며 이에 대해 구매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6. 위반 및 해지

- 16.1. 그러한 중단 또는 해지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류를 불문한 판매자에 대한 책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건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판매자의 기타 권리 및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판매자는 법원의 관여를 요하지 않고 불이행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없이,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구매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건 계약 또는 그 일부를 해지하거나 본건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 (a) 구매자가 본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 (b) 판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구매자가 구매자의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판매자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구매자가 채권자들과 회의 또는 채무정리약정을 체결하거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양도를 체결하거나, 구매자가 제기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자를 상대로 도산, 파산, 청산 또는 해산 절차가 제기된 경우, 또는 구매자의 자산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해 수탁자, 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 16.2. 제16.1조에 명시된 (a)호 및/또는 (b)호의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구매자의 본건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판매자 및/또는 CellMark Group 회사가 입거나 달리 발생시킨 모든 손해, 비용 및/또는 경비에 대해 판매자 및 CellMark Group 회사를 면책하기로 한다.
- 16.3. 제16.1조에 명시된 (a)호 및/또는 (b)호의 경우, 판매자와 CellMark Group 회사의 모든 미지급채권은 즉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인도된 본건 상품의 재인도를 요구하고 이를 재점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매자는 본건 상품이 위치하거나 위치할 수 있는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매자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17. 수출증명서

스웨덴 이외의 지역에 기반을 둔 구매자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본건 상품을 집하하여 이를 외국 영토로 운송 또는 배송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되는 경우) 세법이 요구하는 수출증명서를 판매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는 당해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VAT 또는 기타 (수출) 관세 또는 구매자에 대한 인도에 관하여 판매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추가 부과금을 지급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 18. 양도 및 하도급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이러한 동의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절될 수 없음) 본건 계약 또는 그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자신에게 이전된 계약들에 구속되고 동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상대방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시점까지 어떠한 이전도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CellMark Group의 다른 회사에게 또는 본건 상품과 관련된 판매자의 자산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러한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거나 하도급할 수 있다.

## 19. 사기 인식

- 19.1. 판매자는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3자 사기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정보의 불일치나 의심되거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발견하는 경우, 검증된 전화번호나 이전에 확인 및 검증된 알려진 연락방식 등 기타 적절하고 독립적인 검증된 두번째 통신채널을 통해 판매자의 회계팀 구성원과 직접적으로 모든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즉, 지급을 요청하고/하거나 지급지시를 제공하는 이메일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됨).
- 19.2. 구매자는 자신이 적절한 정보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a) 디지털 통신에서 실제 상대방을 식별하고 잠재적 사기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피싱 이메일 및 스푸핑 이메일로부터 보호기능 사용 및 보안절차 구축 등); (b) 구매자가 모든 중요한 정보를 이전에 확인 및 검증된 알려진 연락방식 등 신원을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하고 독립적인 추가 통신채널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즉,

지급을 요청하고/하거나 지급지시를 제공하는 이메일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됨)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이러한 조치가 사기 시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음을 보장한다.

- 19.3. 변경된 지급조건이나 인도조건에 대하여, 단독 채널에서의 정보 확인(이메일만 이용하는 경우 등)은 사기 보호 절차로 충분하지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적절하고 독립적이고 검증된 두 개의 통신채널을 항상 이용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 판매자의 회계팀 및/또는 검증된 전화번호를 통해 CellMark의 연락담당자와 확인할 때까지 금융거래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20.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 및 세법 준수

- 20.1. 구매자는 자신이 본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재,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 및 세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됨 없이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판매자에게 진술, 보장 및 확약한다.
- 20.2. 여하한 사유로 구매주문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 CellMark는 제16조에 따라 본건 계약을 거절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이는 그와 관련된 판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본건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 21. 포기

판매자가 언제라도 본 약관을 포함한 본건 계약의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여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조건을 집행할 판매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판매자의 권리는 해당 조항의 집행에 대한 지연, 불이행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포기하더라도 이전의 또는 후속 위반에 대해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22. 데이터 보호

- 22.1. 양 당사자들은 본건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로 한다.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들은 개별 정보처리계약에 대하여 선의에 따라 논의 및 합의한다.
- 22.2. 판매자는 본건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고 구매자와의 사업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연락처 정보 등 구매자의 연락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해당 정보는 사기 조사 중에 통계분석 및 사업보고 목적상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판매자는 본 약관에 명시된 목적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Cellmark Group의 다른 회사들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데이터는 EU/EEA 지역 외부에 소재한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 판매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시행한다. 등록된 사람들은 서면 요청 시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2.3. 판매자는 뉴스레터 발송, 설문조사, 제품홍보 및 행사초대를 위해 구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는 상기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할 자격을 가진 Cellmark Group 회사들에 구매자측 연락담당자를 포함한 구매자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 수신인은 [basic.materials@cellmark.com](mailto:basic.materials@cellmark.com)으로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추가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 23. 준거법 및 분쟁

23.1. 본건 계약 및 본 약관은 영국법에 따라 규율 및 해석되며, 본 조의 조항을 유효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1996년 중재법이나 그 개정법 또는 재제정법에 따라 런던에서의 중재에 회부된다. 심리가 영국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중재지는 영국으로 정한다.

23.2. 중재는 중재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유효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LMAA)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23.3.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가 1인씩 선정하고 세번째 중재인은 LMAA 규칙에 따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선정한다.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선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당 통지에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통지 후 14일 내에 자신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위 14일 내에 자신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그와 같이 하였음을 통지하지 않는 한 자신의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으로 선정할 것임을 적시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고 통지에 적시된 14일 내에 위와 같이 하였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사전 통지를 제공할 필요 없이 자신의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단독 중재인의 판정은 해당 중재인이 합의에 의해 선정된 것처럼 양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23.4.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이 위 조항들을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3.5. 청구나 반대청구가 총 미화 100,000달러(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중재는 중재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유효한 LMAA 소액청구절차(Small Claims Procedure)에 따라 진행된다.

23.6. 청구나 반대청구가 LMAA 소액청구절차에 대해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나 해당 청구나 반대청구가 총 미화 400,000달러(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가 중재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유효한 LMAA 중액청구절차(Intermediate Claims Procedure)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에 추가로 동의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선정 절차는 상기의 완전한 중재를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3.7.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재절차에 관한 모든 통지 및 커뮤니케이션(해당 절차의 개시 및/또는 중재인 선정을 통지하는 커뮤니케이션 포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23.8. 일방 당사자는 본 조에서 규정된 이메일 주소(또는 이전에 통지에 의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된 주소)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 통지를 교부하여 본 조의 목적을 위해 통지 및 커뮤니케이션이 발송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 및/또는 추가할 수 있다.
- 23.9. 본 조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통지 및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이 발송된 일시로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효력이 발생한다.
- 23.10.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건 계약과 관련된 중재절차에 관한 여하한 통지나 커뮤니케이션이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송달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23.11. 어느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관한 통지 및 커뮤니케이션을 송달받을 권한을 가진 변호사나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조의 조건에 따라 해당 선정 및 새로운 송달정보에 대해 고지 받아야 하며, 추후의 송달 및 커뮤니케이션은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지정된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이 더 이상 대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본 약관에 포함된 조항이 다시 적용된다.
- 23.12. 다만,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건 계약과 관련된 중재절차에 관한 여하한 통지 및 커뮤니케이션이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발송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24. CellMark가 법원 구제수단을 신청할 선택권

- 24.1. 이와 상충하는 제23조 또는 본 약관의 기타 조항에서의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여하한 관할권의 법원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임시 또는 보전 처분에 대한 절차를 개시 및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관계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하한 하나의 법원이나 관할권에서 해당 절차를 개시 및 수행하더라도 판매자가 다른 법원이나 관할권에서 절차를 개시하거나 수행하는 것(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불문함)을 금하지 아니한다.
- 24.2. 또한, 판매자는 분쟁을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나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기타 법원(“법원”)에 회부할 선택권을 가진다. 판매자가 방어당사자인 경우, 그러한 선택권은 중재통지 후 14일 내에 선언되어야 하며, 그러한 선언 시 당사자들은 중재가 (판정을 내리지 않고) 중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24.3. 판매자가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에 본건 계약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데 대한 현재 또는 향후의 이의제기를 포기하며, 당사자들은 법원의 전속관할권에 취소불능으로 동의한다.
- 24.4. 판매자가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신속하게,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관할권에서의 송달 주소 및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선정된 관할권 내 변호사에 대한 연락정보를 판매자에게 통지한다.

24.5. 법원이 내리거나 집행할 본건 계약에 관한 판결은 중국적인 것으로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다른 관할권에서 심사 없이 집행될 수 있다.

**25. 제3자 권리 부존재**

25.1. 본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어떠한 자도 본건 계약의 조항을 집행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1999년 계약(제3자 권리)법이 본건 계약 및 이에 따라 체결되는 기타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데 동의한다.